

2026년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“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” 참여기업 모집 공고

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주최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활력 제고를 통해 영천시 금호읍으로의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「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」의 일환으로,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‘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’의 신규 지원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3월

(재)경북테크노파크 원장

사업개요

- 사업명 :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
- 세부사업 : 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
- 모집기간 : 2026. 3. 16.(월) ~ 2026. 3. 31.(화) 18:00
- 모집정원 및 대상

구분	모집 정원	자격요건	
		대상	세부 자격
■ 청년창업	00개 사	영천시 외 타 지역 청년 (만19~45세)	- 타 지역 거주 청년 예비창업자(선정 후 사업자 제출) - 1년 이상 타 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 대표자가 운영 중인 본점이 타 지역에 소재 중인 7년 이내 창업기업(공고일 기준)
■ 이전기업	00개 사	경북 외 타 지역 기업	- 제조업을 영위 중인 법인(법인 전환 예정포함) 기업 -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북 외 타 지역 소재 기업(본점 기준) - 협약 후 3개월 내 영천시 금호읍 내 본사 이전 가능 기업 - 협약 기간 중 영천시 금호읍 내 공장 설립 및 등록 가능 기업
■ 스케일업 (영천기업)		영천시 소재 기업	- 제조업을 영위 중인 기업 -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천시 소재 기업(본점 기준) - 협약 기간 중 영천시 금호읍 내 공장 설립 및 등록 가능 기업
■ 스케일업 (이웃사촌)		본 사업 청년창업 지원 수혜기업	- 제조업을 영위 중인 기업 - 2023년 5월에 본 사업의 청년창업 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, 주소 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이웃사촌마을 청년 창업기업 - 협약 기간 중 영천시 내 공장 설립 및 등록 가능 기업

- ※ 최초 협약일 기준 3개월 내 사업장 본점(금호읍 내) 및 대표자 거주지(영천시 내) 이전 후 3년 유지 필수. (단, 이전기업 및 스케일업 기업 대표자가 영천 시민인 경우,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이전 해당 없음)
- ※ 스케일업(이웃사촌)분야 지원기업은 기존 주소유지 의무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추가로 3년간 사업장 본점(금호읍 내)과 대표자 및 필수 유지인원의 주소지(영천시 내) 유지 필수.
- ※ 심사 요건(자격요건 및 점수)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집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할 수 있음.
- ※ 상기 지원을 수혜받는 경우, 타 창업 관련 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함.

II

신청자격 및 지원대상

- 청년창업 :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창업기업, 예비창업자
 - 1) 1년 이상 영천시 외 타 지역*에 거주 중인 청년* 예비창업자
 - 2) 1년 이상 영천시 외 타 지역*에 거주 중인 청년*이 대표자인 본점이 타 지역*에 소재 중인 7년 이내 창업기업 (공고일 기준)
 - ※ 상기 내용은 대표자의 ‘주민등록표 초본’을 기준으로 판단함.
 - * 청년 기준 :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19~45세
 - * 타 지역 1년 이상 거주 기준 : 공고일로부터 직전 1년간의 주민등록지

- 이전기업 :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 - 1) 본점이 경북 외 타 지역에 1년 이상 소재 중인 기업
 - 2) 제조업을 영위 중이며, 법인사업자(법인전환 예정 포함)인 기업
 - 3) 협약 후 3개월 내 ‘영천시 금호읍’으로 본사 이전이 가능한 기업
 - 4) 협약 기간 중 ‘영천시 금호읍’ 내 공장 설립 및 등록이 가능한 기업
 - ※ 법인전환 예정인 기업의 경우, 법인전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.

- 스케일업(영천기업)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 - 1) 본점이 영천시에 1년 이상 소재 중인 기업
 - 2) 제조업을 영위 중인 기업
 - 3) 협약 기간 중 ‘영천시 금호읍’ 내 공장 설립 및 등록이 가능한 기업

- 스케일업(이웃사촌)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 - 1) 2023년 5월에 본 사업의 청년창업 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, 주소 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이웃사촌마을 청년 창업기업
 - 2) 제조업을 영위 중인 기업
 - 3) 협약 기간 중 ‘영천시’ 내 공장 설립 및 등록이 가능한 기업
 - ※ 단, 사업장 본점은 ‘영천시 금호읍’ 내에 유지하여야함.

- 지원 제외 대상 : [별표 1] 참조

III

지원내용

가. 공통사항

- 협약기간 : 협약 체결일 ~ 2026. 11. 30.
- 지원내용

구 분		세 부 내 용
지원금		- 시설·장비 운영, 시제품 제작, 홍보·마케팅, 특허 출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연 계 지 원	맞춤 컨설팅	- 기업의 수요 및 상황에 맞는 전문가 연계 맞춤형 컨설팅 지원
	각종 교육	- 창업기업 및 이전·스케일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교육 제공
	이웃사촌마을 연계 지원	-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내 타 사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 (예시) '자율형 공동스토어 운영사업' 연계 판매 지원 등

※ 연계지원 프로그램의 경우, 별도 신청 및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.

나. 청년창업

- 지원금 : 이주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소요되는 창업 인프라 (공간, 장비 등) 임차, 시제품 제작, 홍보·마케팅, 지식재산권 확보 등의 사업화 자금 지원
(1차년 최대 40,000천원 / 지원금의 10% 현금 부담)

구 분	최대 지원금(A)	기업부담금(B)	합계(C=A+B)
지원금(원)	40,000,000	4,000,000	44,000,000

- ※ 1차년도 결과 및 2차년도 선정평가 후 2차년 추가 차등 지원(2년간 최대 100,000천원)
- ※ 부가가치세 사업비 사용 불가 / 지원금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.

다. 이전기업

- 지원금 : 경북 외 지역 소재 기업의 성공적인 지역 이전·정착을 위한 본사 및 생산시설 이전·구축(임차) 및 신제품개발 또는 제품고도화 등 자금 지원
(단년도 최대 200,000천원 / 지원금의 10% 현금 부담)

구 분	최대 지원금(A)	기업부담금(B)	합계(C=A+B)
지원금(원)	200,000,000	20,000,000	220,000,000

- ※ 지원금 5천만원 당 1명 영천시로 주소이전(가족 및 임직원 등) 및 3년 유지 필수
- ※ 부가가치세 사업비 사용 불가 / 지원금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.

라. 스케일업(영천기업)

- 지원금 : 관내 기업의 지역 외 유출 방지를 위한 생산시설 확장·구축 및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고도화 등 자금 지원
(단년도 최대 200,000천원 / 지원금의 10% 현금 부담)

구 분	최대 지원금(A)	기업부담금(B)	합계(C=A+B)
지원금	200,000,000	20,000,000	220,000,000

- ※ 지원금 5천만원 당 1명 영천시로 주소이전(가족 및 임직원 등) 및 3년 유지 필수
- ※ 부가가치세 사업비 사용 불가 / 지원금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.

마. 스케일업(이웃사촌)

- 지원금 : 청년창업 수혜 이주 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생산시설 확장·구축 및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고도화 등 자금 지원
(단년도 최대 200,000천원 / 지원금의 10% 현금 부담)

구 분	최대 지원금(A)	기업부담금(B)	합계(C=A+B)
지원금	200,000,000	20,000,000	220,000,000

- ※ 지원금 5천만원 당 1명 영천시로 주소이전(가족 및 임직원 등) 후 기존 주소유주의무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추가 유지 필수(기존 유지 중인 대표자 포함)
- ※ 부가가치세 사업비 사용 불가 / 지원금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.

바. (참고사항) 사업비 편성 기준 요약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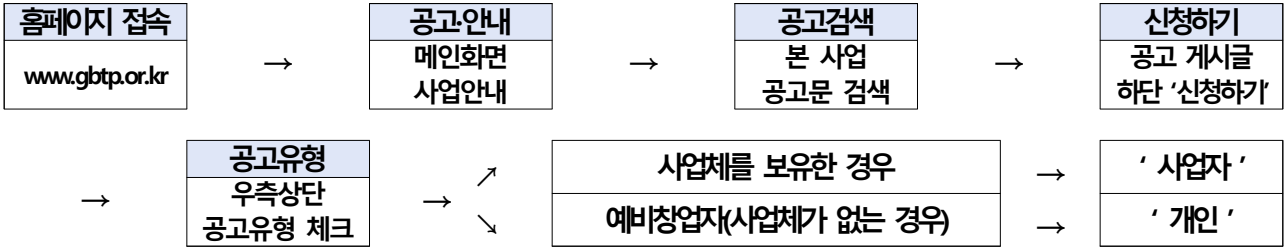
비목	세목	세세목	설명	비고
직접 사업비	장비	시설·장비 운영비	사업운영 편의를 위한 사무실, 공장, 교육장, 기자재 임차, 시험 분석비 등 사업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비용	
		재료비	재료 구입비	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
	제품디자인비		신제품 또는 기존제품 업그레이드 시 적용되는 제품디자인비	
	활동비	홍보마케팅비	신문광고, 브로셔, 리플렛 제작, 전시참가비 등	
		용역비	시제품 제작 등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비용	
		전문가 활용 및 정보수집비	사업추진을 위한 컨설팅비, 국내외 훈련, 자료 구입, 학회 참가비* 등 * 참여인력에 한하여 지급	총사업비 20% 이내
간접 사업비	간접비	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	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	직접비 6% 이내

IV

신청방법 및 접수 · 문의처

□ 접수기간 : 2026. 3. 16.(월) ~ 2026. 3. 31.(화) 18시 까지

□ 접수방법 : 제출서류에 명시된 순서대로 파일명을 변경 및 압축(zip) 후 제출



※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 제출 절대 불가(접수종료일 1일 전 제출 권장)

※ 접수 시스템 미숙 및 오류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, 해당 책임은 지원자(기업)에게 있음.

□ 문의처 : ☎ 054-339-3353(경북TP 기업지원단 지역기업활력지원실)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 목록
필수	① 제출서류 체크리스트
	② (서식1) 지원사업 상세계획서(한컴오피스) (서식2)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
	③ (서식3) 중복지원 금지사항 약속서 (서식4)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약속서
	④ 사실증명(총사업자 등록내역) - 홈텍스에서 대표자 명의 발급 ※ '사업자등록증명원'과 다른 서류이며, 발급 시 필수 확인 요망
	⑤ 사업자등록증명(변동사항 포함 - 주소 변동 내역) ※ 예비 창업자인 경우 제외
	⑥ 주소 이력이 확인 가능한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
	⑦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(법인/대표자) ※ 개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인 경우, 대표자 본인만 제출
	⑧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※ 예비 창업자 혹은 1인 기업인 경우 제외
	⑨ 최근 3년(23~25년) 표준재무제표증명 ※ 전년도 재무제표 미확정 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
	이전기업
해당 시	⑪ 공장등록증, 회사소개서, 제품 홍보자료 등
	⑫ 지식재산권, 인증관련 : 특허, 벤처기업, 메인비즈, ISO 등
	⑬ (서식5)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
	⑭ (서식6) 법인전환 약약서

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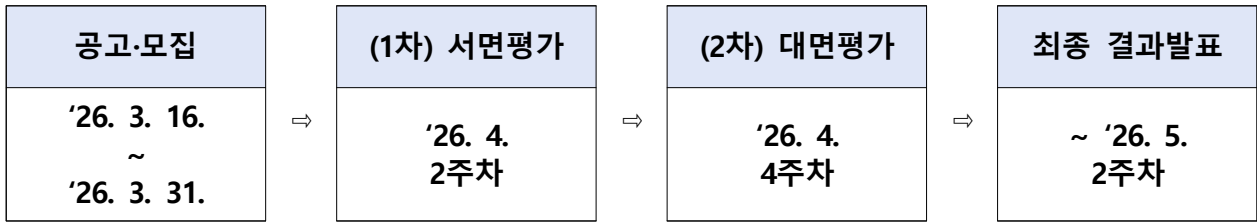
※ '청년창업 지원기업' 도 ⑩ 해당 시 제출 가능

※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지원 제외 대상

V

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

가. 선정평가 절차



※ 위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나. (1차) 서면(서류) 평가

- 1) 평가방법 :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
- 2) (사전검토) 既개발 및 既지원 중복성 여부 / 지원 제외 대상 여부
- 3) (실태조사 또는 면담) 신청 기업의 신청 자격, 운영체계, 기술성 및 사업성, 계획의 적정성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또는 면담(유선 등)을 실시할 수 있으며, 반드시 대표자와 면담을 진행함

다. (2차) 대면(발표) 평가(대표자 필수 참석)

- 1) 평가방법 :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
- 2) 발표평가 시 대표자가 미참석할 경우, 자동 탈락처리 될 수 있음.
- 3) 사전검토(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) 결과,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, 사업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, 지원금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선정
- 4) 종합평가에 따른 우선순위, 신청기업의 사업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 선정을 진행하며,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“탈락”, 70점 이상인 기업들 중 최상위 득점 순서대로 지원 건수만큼 “최종선정” 함
- 5) “최종선정”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을 진행하며, 1개월 이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(사업 포기, 자격 박탈)이 발생 시, 70점 이상인 기업 중 차상위 득점을 한 기업과 협약 진행 가능

라. 평가기준

1) 청년창업 분야

평가항목	세부내용
창업자의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창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(전공, 경력, 프로젝트 수행실적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)
아이템의 기술성(구체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기업 제품(서비스) 개발의 주요방안 • 참여 아이템의 창의성 및 원천기술 등 보유 여부
사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쟁 제품 대비 경쟁력 및 유사 아이템과의 차별성 • 마케팅 전략의 합리성 및 수익창출 가능성 •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
계획의 성장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 사업 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제시의 타당성 • 사업 계획 및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의 명확성 • 자금조달 계획 및 지원금(사업비) 사용 계획의 합리성
정착 및 이탈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표자·임직원의 정착 의지(이주 가능성) • 사업 종료 후 정착 계획 및 의지
지역연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천지역(금호읍) 활동 계획 및 연계성

2) 이전기업/스케일업(영천기업) 분야

평가항목	세부내용	
사업추진 목표 및 필요성	필요성 및 차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 필요성 및 지원기업의 차별성
	경영자의 경영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유기술 이해도, 신기술 개발, 기획 및 마케팅 등 경영 역량
	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• 이전 및 확장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
사업추진 체계	추진 의지 및 준비 상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기업의 추진 의지 및 준비 상황 (건물, 장비 관련 사전 견적 및 조사 등)
	사업비 사용 계획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(총사업비, 기업부담금, 세부 예의 적정성 등)
이전·확장 전략 및 성과	고용 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및 청년 고용 확대·유지 가능성
	지역기여 계획의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출(국내/외) 증대의 가능성 •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사회 기여 가능성
	확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존사업 영역의 확장성 • 영천지역(금호읍) 이주 및 유지 계획의 구체성

3) 스케일업(이웃사촌) 분야

평가항목		세부내용
사업추진 목표 및 필요성	필요성 및 차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 필요성 및 지원기업의 차별성
	경영자의 경영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유기술 이해도, 신기술 개발, 기획 및 마케팅 등 경영 역량
	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• 이전 및 확장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
사업추진 체계	추진 의지 및 준비 상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기업의 추진 의지 및 준비 상황 (건물, 장비 관련 사전 견적 및 조사 등)
	사업비 사용 계획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(총사업비, 기업부담금, 세부 예의 적정성 등)
이전·확장 전략 및 성과	고용 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및 청년 고용 확대·유지 가능성
	지역기여 계획의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출(국내/외) 증대의 가능성 •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사회 기여 가능성
	확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존사업 영역의 확장성 • 영천지역(금호읍) 이주 및 유지 계획의 구체성
	지역 기여 및 사업 참여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 이주 후 지역 내 기여도(지역민 고용 및 지역 기부 등) • 본 사업 참여도 및 적극성(행사 및 교육 등)

VI 사업운영 및 기업모니터링

□ 사업비 구성 : 사업비 구성은 '지원금'과 기업이 부담하는 '기업부담금(현금)'을 합한 금액으로 함(현물은 선택 사항)

※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%(현금 필수) 이상으로 함

(예시) 지원금 40,000천원 + 기업부담금 4,000천원 = 사업비 44,000천원

□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

- 1) (사전 교육) 성공적인 창업 및 이전·정착을 위한 필수 교육 및 사업 규정 관련 교육 진행(미이수 시 협약 불가)
- 2) (협약 준비) 컨설팅을 통해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의견사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수정 및 보완 제출
- 3) (협약 체결) 수정사업계획서 내 의견사항 반영여부 확인 이후 협약 체결
- 4) (본점 이전) 사업장(본점) 이전 후 현장조사(전문가 대동 가능) 실시

□ 모니터링(진도점검)

- 1) 지원사업 수행내용 및 기업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협약기간 중간에 연 1회 이상 면담 또는 기업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
- 2) 모니터링 실시를 위해 지원기업에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기업에 대한 면담 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- 3)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계획서 또는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, 모니터링 시 불가피하게 기술·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주관기관은 협약이 정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
- 4) 정기적인 모니터링 외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근무 계획에 맞는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.

VII 사후관리

□ 지원사업 결과물의 사후관리 협조

- 1) (결과물의 귀속) 지원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·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(기업) 소유로 함.
- 2) (사후관리) 주관기관(기업)은 최종 평가 결과 통보연도부터 3년간 지원 결과로 인한 성과(매출, 수출, 고용 등) 및 자료를 관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, 관리기관에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.
- 3) (이전유지) 주관기관(기업)은 최초 협약 시 이전한 거주지 및 사업장을 최초협약일 기준 최소 3년간 유지(제한지역 내 이전은 가능)해야 하며, 관리기관에서 관련 자료(주소 및 사업장 증빙서류 등)제출 및 현장 방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.

IX 참고사항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업,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사업추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
- [사업비] 사업비 =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지원금 + 기업부담금(현금)
 - 장비구입 등 자산 구매와 관련한 사항은 사업비 계상 불가
 -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% 이상을 현금 계상 필수
 -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액 기업 부담
 - 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약기간 및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
- 본 사업 선정 및 협약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
- 사업비유용, 협약위배, 자산취득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
- 그 외 선정 시 주관기관의 ‘의무사항’ 은 [별표 2] 참조

[별표 1] 지원 제외 대상

□ 지원 제외 대상

<p>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</p> <p><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) 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 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<p>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</p> <p>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) 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<p>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</p> <p>④ 의성군 안계면, 영덕군 영해면 등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기지원받은 청년, 기업, 단체 등 → 적발시 보조금 및 발생이자 전액 환수</p> <p>⑤ 중소기업창업부(舊 중기청) 창업 및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*에 선정되어 사업수행 혹은 중단 중인 자(기업)</p> <p>⑥ 타 중앙정부공공기관·지자체의 창업 및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*에 선정되어 사업수행 혹은 중단 중인 자(기업) *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 확보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</p> <p>⑦ 중소기업창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</p> <p>⑧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</p> <p>⑨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</p> <p>⑩ 기타 경상북도 도지사 또는 영천시 시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</p> <p>⑪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「의견거절 또는 부적정」(기업)</p> <p>⑫ 제출서류(신청서 등) 미비(누락, 불성실작성 등) 신청자</p> <p>⑬ 협약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가능한 자(기업)</p> <p>※ 사업 협약 이후 상기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</p>

□ 창업지원 제외 업종

NO	대상 업종	코드번호
1	- 일반 유흥 주점업	56211
2	- 무도 유흥 주점업	56212
3	-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- 그 밖에 1~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기업창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[별표 2] 지원기업 의무사항

선정 후 협약 시 주관기관(지원기업)의 의무

- ① '주관기관'은 '관리기관'의 규정 및 사업의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.
- ② '주관기관'은 1차년도 최초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 상 '본점 소재지'와 사업계획서에 의거한 '대표자·임직원의 주민등록 주소지'를 각각 '경북 영천시 금호읍'과 '경북 영천시' 내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함.
※ 업종과 무관하게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(임직원)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별도로 이전하여야 함.
※ 동일한 주소지에 타 지원기업과 사업장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없음.(쉐어오피스 불가)
- ③ '주관기관'은 최초 협약일로부터 3년간 휴·폐업, 본점·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을 할 수 없음.
※ 단, 스케일업(이웃사촌) 지원기업은 최초 주소유지 의무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상기 내용을 적용받음.
※ 단, 관리기관의 승인 후 '제한지역(사업장-금호읍 내/거주지-영천시 내)' 내 이전은 가능
※ '총괄기관'에서 지원하는 주거 지원사업을 통한 거주지 이전 시, 3년 6개월간 필수 유지하여야 함.
- ④ '주관기관'은 지원받은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개발 및 사업화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,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.
- ⑤ '주관기관'은 '관리기관'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 및 자료(결과보고서 및 설문조사 등)의 작성 및 제출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함.
- ⑥ '주관기관'은 '관리기관'이 시행하는 현장실사, 불시점검, 중간점검, 평가위원회 등 각종 점검 및 위원회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.
- ⑦ '주관기관'은 '관리기관' 또는 '관리기관이 지정한 자'의 관련 서류 열람 및 제출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.
- ⑧ '주관기관'은 '관리기관'이 필수참석을 요청하며 제공하는 각종 교육, 멘토링,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 및 행사에 필수 참석하여야 함.
- ⑨ '주관기관'은 3년 간의 '주소 유지기간' 동안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'근무 계획'을 준수하고, '관리기관'이 요청하는 '근무일지'를 양식에 맞추어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.
- ⑩ '주관기관'은 '총괄기관' 및 '관리기관'이 본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타 연계 지원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된 각종 공과금(월세, 임차료, 관리비 등), 제세금 납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.

※ '관리기관'은 '주관기관'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, '경고 조치'를 할 수 있으며, '경고 조치' 3회 이상 누적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.

※ 전문가를 대동한 불시점검으로 위장 전입, 공장 미가동 등 부정수급 적발 시 총괄기관의 권한으로 전국 광역·지자체에 임직원 명단공개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음.

[별표 3] 사업비 계상 기준

비목	세목	세세목	설명	비고
직접 사업비	장비 · 재료비	시설·장비 운영비	사업운영 편의를 위한 사무실, 공장, 교육장, 기자재 임차, 시험 분석비 등 사업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비용 ※ 보증금 불가, 영천시 금호읍 지역에 한정, 임대차 계약서 체결 필수, 협약기간 내만 사용 가능	
		재료 구입비	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 ※ 판매 목적의 양산품 제조를 위한 재료구입 불가 ※ 사업종료 1개월 전부터 사용 불가	
		제품디자인비	신제품 또는 기존제품 업그레이드 시 적용되는 제품디자인비	
	활동비	홍보·마케팅비	신문광고, 브로셔, 리플렛 제작, 전시참가비 등	
		용역비	시제품 제작 등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비용 ※ 시제품 판매 불가	
		전문가 활용 및 정보수집비	사업추진을 위한 컨설팅비(지원기업 관련 기술, 인사, 노무, 재무분야 등), 국내외 훈련, 자료 구입, 학회 참가비* 등 * 참여인력에 한하여 지급	총사업비 20% 이내
간접 사업비	간접비	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	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	직접비 6% 이내

※ 모든 사업비 사용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(간이영수증 불가)